

「구미시 청년 주거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정도 의원 외 1인

2. 찬 성 자 : 김민성 의원 외 5인

3. 제안이유

- 청년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제3조
 - 「주택법」 제2조
 - 「청년기본법」 제20조
 -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청년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 제4조 및 제5조를 통해 주거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과 정책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이중 수혜로 인한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자격 검증과 지원 이력 조회를 실시하고, 사후 관리 단계에서도 수혜자의 거주지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불필요한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